하남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 2554

발의연월일 : 2022. 11. 21.

발 의 자:오승철 의원

1. 제안 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[하남시 의정비심의위원회]에서 결정 통보된 하남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[별표 1] 월정수당 지급기준표를 2022년도 공무원보수인상율(1.4% 이내)에 맞추어 반영코자 함

2. 주요 내용

가. [별표 1] 월정수당 지급기준표 지급금액 변경에 관한 사항

- 2023년 월정수당은 2022년 공무원 보수인상률(1.4%) 반영한 월 2,548,180원으로, 2024 ~ 2026년까지는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율 1/2 반영
 - 월 2,513,000원에서 월2,548,180원으로 변경
- 3. 개정조례안 : 덧붙임
- 4. 신구조문 대비표 : 해당없음

하남시조례 제 호

하남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하남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월정수당 지급기준표 지급금액란 "월2,513,000원"을 "월 2,548,180원" 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월정수당 지급기준표(제2조제3항 관련)

구 분	지 급 금 액	비고
의회의원	월 2,548,180원	